第116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2000 · 7 · 통권 제70호

Ⅰ. 개회식 3

Ⅱ. 제11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5

Ⅲ. 부 록

1. 의사일정 11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13

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7월 22일(토요일) 11시 04분

開會式順(第116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 :의사담당 유근영)

(11시 04분 개식)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 의사담당 유근영 (11시 05분 폐식)

지금부터 제11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0년 7월 22일(토요일) 11시 05분

議事日程 (제1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1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도시교통유발촉진법 개정안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1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손만재위원 외 6인)

(11시 05분 개의)

● 의장대리 이기수

제11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회기 때에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 최근 우리 교육계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편 논의 문제 등에 관련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정부에서는 전에 없던 교통유발부담금을 각급 학교에 부과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의 확보가 더욱 절실한 시점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이런 구상은 지방교육재정에 더욱 압박을 가할 것이며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번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청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한편, 우리 교육계의 모두에게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갑작스럽게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교육위원님들과 집행청 모두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옴)

---

1. 경과보고

(11시 07분)

● 의사과장 이상기

의사과장 이상기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 7월 20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 전원의 서명으로 교육위원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고 제2000-8호로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제114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의안중 충청북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폐지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13일 제1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이송되어 왔으며, 충청북도교육위원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 13일 제1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15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입니다.

교육기관 방문의 건은 방문결과를 요약정리하여 7월 20일 집행청에 송부하였으며,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 반대 결의문은 같은 날짜로 중앙 관계 부처 및 각 시·도 교육위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위원 발의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대리 이기수

수고하셨습니다.

---

2. 제11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10분)

● 의장대리 이기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제11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오는 7월 22일 1일간으로 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2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의사일정안 : 별첨1

(끝에 실음)

3.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11시 11분)

● 의장대리 이기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체 발의위원을 대표하여 손만재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만재위원 발언대로 나옴)

● 손만재 위원

손만재 교육위원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 반대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본인을 포함하여 교육위원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올바르게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재정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교육에 대한 국민의 권리·의무를 실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공 시설물인 각급 학교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려는 발상은 헌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것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정부의 의도대로 개정될 경우 우리 도내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544교 중 29%에 달하는 155개교가 부과대상에 포함되어 연간 2억2,600만원이라는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재정이 더욱 악화되어 교육기반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정책의 교육적 역기능을 심각하게 우려한 우리 교육위원 일동은 각급 학교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려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료 위원님께 이미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찬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 반대 결의문,

우리는 최근 정부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하면서 각급 학교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려는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개정 목적이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도시교통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통수요관리 강화를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함이라 하지만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

학교 교육용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제외대상이며, 각급 학교는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교육에 대한 국민의 권리·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공시설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시설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동일시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교육세 인상 등 교육투자 재정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때 각급 학교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결국 교육재정의 증가요인이 되어 학부모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동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의 교통유발부담금 학교시설부과법 개정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민의 권리·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공시설물인 각급 학교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개정추진은 중지되어야 한다.

1. 학생들 대부분이 도보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고 있어 교통혼잡유발과 관계없음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취지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벗어나는 것이다.

1.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법개정은 일선 교육현장의 실정을 전혀 모르는 발상이다.

1. 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교육재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공공교육을 정상화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교육동지, 학부모, 도민 등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0년 7월 22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동."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손만재위원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 별첨2

(끝에 실음)

● 의장대리 이기수

손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은 교육위원 모두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문은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의 해당 부처로 각시·도 교육위원회에 송부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려는 정부의 처사에 대하여 교육위원 모두의 강력한 반대 의지를 모두에게 천명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회

의소집에 임하시어 우리 충북교육을 걱정하고 힘을 모아주신 여러 교육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은 손만재 위원님과 김광수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 및 제116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9분 폐회)

○ 출석위원 : 6명

부의장 이기수, 위원 김광수, 손만재, 송진하, 이상일, 이충원.

○ 출석공무원 : 12명

교육국장 이주원,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공보감사담당관 안용균,
초등교육과장 신유철,	중등교육과장 김전원,	과학실업교육과 정호선,
교육정보화과 채수병,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신춘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박영하,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의사일정안 : 별첨1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 별첨2

제11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0. 8. .

의 장 조 일 환

위 원 손 만 재

위 원 김 광 수

의사국장 김 성 기

(별첨1)

議 事 日 程

第116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臨時會) 2000. 7. 22.(1 日間)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7月 22日(土) (10:30)	□ 懇談會 : 敎育委員室	
(11:00)	□ 開會式	
	[第1次 本會議 開議]	
	1. 第116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 會期 : 2000. 7. 22.(1 日間) 2.「都市交通整備促進法 改正案 反對」決議文 採擇의 件	
	[第1次 本會議 散會]	
	※ 閉 會	

(별첨2)

의안번호	제 116 - 1호
의 결 년 월 일	2000. 7. 22. (제 116 회)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반대 —

결 의 문 채 택 의 건

발 의 자	손 만 재 교육위원 외 6 명
발의년월일	2000. 7. 14.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반대 —

결 의 문 채 택 의 건

의 안 번 호	제 116 - 1호

발의년월일 : 2000년 7월 20일
발 의 자 : 손만재 교육위원외 6명

1. 주 문

제116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중 다음과 같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다.

2. 사 유

○ 최근 정부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각급학교의 교육용 시설물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반대함.·

○ 헌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국민의 교육에 대한 권리·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공시설물인 각급학교의 교육용 시설물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담하려는 것은 불합리하며,

○ 교육용 시설물에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는 교육재정의 증가요인이 되어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우리 도의 경우 연간 2억 2,600만원의 교육재정이 소요되므로,

○ 교육위원 일동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압박을 가중시키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 시도를 중지하도록 촉구하고자 함.

3. 결의문 : 붙임과 같음

4. 찬성자 서명부 : 붙임과 같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반대 결의문

우리는 최근 정부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하면서 각급학교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려는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개정목적이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도시교통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통수요관리 강화를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함이라 하지만,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학교 교육용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제외대상이며, 각급학교는 헌법제31조「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교육에 대한 국민의 권리·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공시설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시설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동일시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교육세 인상 등 교육투자 재정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때 각급학교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결국 교육재정의 증가요인이 되어 학부모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동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의 교통유발부담금 학교시설부과 법개정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민의 권리·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공시설물인 각급학교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개정 추진은 중지되어야 한다.
1. 학생들 대부분이 도보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통학하고 있어 교통혼잡유발과 관계 없음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취지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벗어나는 것이다.
1.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법 개정은 일선 교육현장의 실정을 전혀 모르는 발상이다.
1. 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교육재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공교육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교육동지, 학부모, 도민 등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0년 7월 22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일동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

□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입법예고 내용 (교육청 관련사항)

○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학교 교육용 시설물은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법률개정안에는 부담금 납부대상이 됨.

○ 부과대상

- 상주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안에 있는 시설물(단, 상주인구 1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인 도시에서는 도지사 승인을 얻은 경우)
- 도·농통합 시의 읍·면에 소재하는 학교 제외
-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 부담금 부과 기준

- 부담금 =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 1㎡당 350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조정가능)
  - 교통유발계수 : 1.0 ~ 1.42
  -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은 50% 경감

□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

지금까지 각급학교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제외대상이었으나, 금번 입법예고된 내용에서는 납부대상이 됨에 따라 우리 도의 경우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544개교중 159개교(29.2%)가 부가대상이 되어 연간 부담금이 약 2억 2,6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됨.

연간 교통유발부담금 산출내역

학교급별	전 체 학교수	부과대상 학교수				부과연면적 (㎡)	부과금액 (천원)
		청주	충주	제천	계		
유 치 원	104	10	1		11	22,228	7,780
초등학교	245	43	15	11	69	437,527	77,233
중 학 교	113	23	7	5	35	287,396	49,021
고등학교	74	23	9	6	38	369,541	83,176
특수학교	8	3	3		6	26,636	8,279
계	544	102	35	22	159	1,143,328	225,489

'교통유발부담금' 학교시설 부과 법개정 추진

교육계 "불합리하다" 반발

1/42 관보

비영리 공공시설물 헌법취지에도 어긋나

사업장에만 부과하던 교통유발부담금을 학교시설에도 부과하는 것으로 정부가 법개정을 추진, 지역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교통부는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그동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던 학교시설물도 부과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충북도내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5백44개교 가운데 29%에 달하는 1백59개교가 부과대상에 포함되며 이들 학교들이 연간 납부해야 할 부담금은 2억2천6백만원에 달한다는 것.

이같이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역교육계는 비영리 공공시설물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시설물들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공시설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시설과 동일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도교육청은 학생들 대부분이 도보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통학하고 있어 교통혼잡유발과는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맞지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밖에 지역교육계는 각급 학교들이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교통유발부담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일선 교육현장을 전혀 모르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열악한 교육재정에 부담을 주게되고 결국 학부모 또는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며 『법이 개정되어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현재로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이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 교육청차원에서 이를 보전해 줄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엄경철기자
eomkc@ccnews.co.kr